
2010년도 O-BIC 외국계기업 진출지원사업 이용안내

1.제도개요

이 사업은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가 대오사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오사카부내에
의 진출을 결정한 외국계기업에 대해서 진출에 필요한 일부 경비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2.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

O-BIC 또는 해당 시정촌 등의 지원을 받아서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
지에 오사카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외국계기업 (외자비율 1/3 이상). 단, 무상의 템포러
리 오피스에서 등기할 경우는 대상외로 한다.

3.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비

O-BIC에 등록된 서포트 기업(※1)이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본점 또는 지점의 설치까지
에 드는 이하의 경비(※2)에 대해서 실비를 한도로 O-BIC이 지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①등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 한 이용자 당 10만엔

②채류자격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3): 한 이용자 당 5만엔

※1 O-BIC 서포트 기업이란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에 필요한 서포트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업·기관·개인으로, O-BIC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http://o-bic.net/e/setup/support/index.html>)

※2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는 대상외로 한다.

부가세 등의 세금, 관공서에 지불하는 비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다른 사
업에 의한 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비

※3 회사의 등기후 3주일 이내에 채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2011년 3월 31일을 넘어서 신청할 경우는 대상외로 한다.

※4 예산에 달하면 종료합니다.

4.지원사업 이용시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2011년 3월 31일까지 본점 또는 지점이 설치되지 않으면 지원사업비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지불된 경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점 또는 지점의 설치에 대해서는 등기, 허인가, 제반 신고의 수속 상황 등에 의해 종합적
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지원사업비의 지불시기

지원사업비는 본점 또는 지점 설치후, 실적보고·지불 확인 등의 수속 완료후에 서비스 제공
자(O-BIC 서포트 기업)에게 직접 지불됩니다.

6.경비의 지불확인

O-BIC의 직원 등이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서나 청구서·영수증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지원사업비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7.변경승인 신청

이용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가 필요하므로, 연락해 주십시오. 단,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승인 신청서가 필요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8.기재언어

이용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기재해 주십시오.

9.기타 주의사항

지원사업을 이용한 사업자는 사업자명이나 지원사업비 이용액 등이 공표되는 일이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10.수속의 흐름

①이용신청에 앞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②본점, 또는 지점의 설치가 결정되면, 가능한 한 빨리 이용신청을 하십시오.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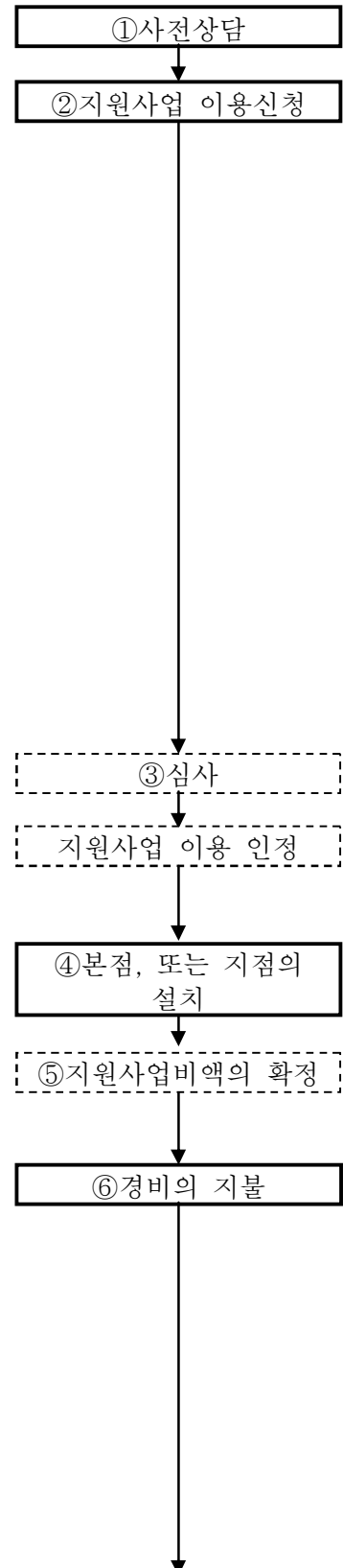
- 이용신청서
 - 사업계획서(자료(1))
 - 서포트기업 이용계획서(자료(2))
 - 견적서의 사본 등 적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
 - 해외의 모회사 등에 관한 개요 등 (팸플릿 등)
 - (개인에 의한 출자인 경우) 출자자 혹은 오사카에서의 대표자의 이력서
 - 외환법 '대내 직접 투자 등에 관한 명령'에 근거하는 주식 취득에 관한 보고서(일본은행에의 보고)의 사본※
 - 정관의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사본※
- ※미등기인 경우는 실적보고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③이용신청서류의 제출이 있었을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본 사업을 이용하실 경우는 '지원사업이용 인정통지서'를 발행합니다.

④본점, 또는 지점이 설치되면 연락해 주십시오.
변경승인 신청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⑤이용신청서류와 서비스 제공자(O-BIC 서포트 기업)로부터의 위탁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지원사업비액을 확정합니다.

⑥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비 중, 이용자 부담분을 지불해 주십시오.



⑦본점 또는 지점의 설치로부터 2 주일이내에 지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⑦지원사업실적보고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실적보고서
 - 사업실적보고서(자료(3))
 - 서포트기업 이용실적보고서(자료(4))
 - 청구서·영수증의 사본 등 근거가 되는 자료
 - 오사카에 설립한 회사 등의 개요 (팸플릿 등)
 - (재류자격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를 신청한 경우) 입국관리국이 서류수리시에 교부하는 신청수리표의 사본
 - ※이하의 서류가 이용신청시 미제출인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 외환법 '대내 직접 투자 등에 관한 명령'에 근거한 주식 취득에 관한 보고서(일본은행에의 보고)의 사본※
 - 정관의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이력사항 전부 증명서) 의 사본※

⑧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비가 적정하게 지불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증빙서류는 사업종료후 5 년간(2016 년 3 월말일까지) 보관해 두십시오.

⑧지불의 확인

⑨지원사업비를 서비스 제공자(O-BIC 서포트 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킵니다.

⑨지원사업비의 지불

주)1 굵은선 범위내는 지원사업 이용자가 하는 수속입니다. 소정기일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점선범위내는 O-BIC 에 의한 수속입니다.
 2 상기 내용은 O-BIC 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11. 신청창구·문의처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O-BIC)
 우편번호 540-0029 오사카시 주오구 혼마치바시 2-8 오사카상공회의소 국제부 내
 TEL 06-6944-6298 FAX 06-6944-6293
 E-mail o-bic@osaka.cci.or.jp URL http://o-bic.net/k/